

#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4. 10. 14.

복지문화위원회

의안 번호	414
----------	-----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9. 30. 강남구청장(복지정책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10. 14.)  
“원안가결”

## 2. 제안설명 요지(복지생활국장 : 오선미)

가. 제안이유

- 강남복지재단에 대해 2025년도 인건비, 운영비를 출연 예정인 바,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강남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출연기관 :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
- 출연근거
  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
  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
- 출연내용 : 강남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재정지원

○ 출연금 : 1,066,647천원

- 인건비 : 755,650천원

- 운영비 : 310,997천원

☞ 「2025년도 서울시 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」에 따라 2024년 발생 예정인 잉여금 73,000천원 (인건비 3,000천원, 운영비 70,000천원)을 2025년도 필요예산액에서 차감 편성

#### 다. 참고사항

○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○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지원)

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(출연금의 교부)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○ 2025년도 서울시 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(잉여금의 처리)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과 발생한 잉여금을 반영하여 출연금 감액 조정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이미영)

#### 1. 동의안 제출 배경

- 본 건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강남구 세출예산 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남복지재단 출연에 대하여 강남구의회에 미리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.
- 먼저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,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출연이 가능함.
- 본 건과 관련하여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2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자 또는 출연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,  
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.
-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출자·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·낭비성 출자·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임.
- 이번 동의안은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하려는 출연금과 관련된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제출 배경과 시기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, 본 동의안의 의결은 출연 여부만 결정하는 것일 뿐 출연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연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2025년도 본예산안 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.

## II. 출연 내용

- 2025년도 출연 예정 금액은 10억 6,664만 7천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5.6%, 5,639만 8천원 증가한 것이며, 세부 내역은 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7억 5,565만원, 운영비 3억 1,099만 7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음.

## III. 종합 의견

- 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, 출연 내용이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인건비와 운영비 확보를 위한 것이며, 본 동의안 의결은 출연 여부만 결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- 다만, 출연금의 경우 정산 및 반환 의무가 없으므로 집행 등에 대한 부서의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, 향후 내년도 예산안 심의 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.

**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없음”**

**5. 토론 요지 : “없음”**

**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**

**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**

**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**

붙임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. 끝.

#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41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9. 30.

제출자 : 강남구청장

제출부서 : 복지정책과

## 1. 제안이유

강남복지재단에 대해 2025년도 인건비, 운영비를 출연 예정인 바,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강남구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

## 2. 출연개요

가. 출연기관 :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

나. 출연근거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

다. 출연내용 : 강남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재정지원

라. 출연금 : 1,066,647천원

- 인건비 : 755,650천원
- 운영비 : 310,997천원

☞ 「2025년도 서울시 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」에 따라

2024년 발생 예정인 잉여금 73,000천원 (인건비 3,000천원, 운영비 70,000천원)을 2025년도 필요예산액에서 차감 편성

마. 세부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25요구액	2024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<b>계</b>	<b>1,066,647</b>	<b>1,010,249</b>	<b>56,398</b>	<b>5.6%</b>
<b>인건비</b>	<b>755,650</b>	<b>706,848</b>	<b>48,802</b>	<b>6.9%</b>
급여	529,170	496,369	32,801	6.6%
연차수당	17,522	15,835	1,687	10.7%
초과근무수당	69,503	62,277	7,226	11.6%
명절수당	52,917	49,637	3,280	6.6%
가족수당	4,800	4,800	0	0.0%
장기근속수당	1,900	1,200	700	58.3%
자격증수당	4,320	4,320	0	0.0%
정액급식비	20,160	20,160	0	0.0%
퇴직연금 부담금	55,358	52,250	3,108	5.9%
<b>운영비</b>	<b>310,997</b>	<b>303,401</b>	<b>7,596</b>	<b>2.5%</b>
4대보험	<b>2,652</b>	<b>16,139</b>	△13,487	△83.6%
복리후생비	<b>20,200</b>	<b>19,500</b>	700	3.6%
직원 급량비	<b>10,368</b>	<b>8,448</b>	1,920	22.7%
여비	<b>18,600</b>	<b>18,600</b>	0	0.0%
<b>직무수행경비</b>	<b>1,920</b>	<b>1,920</b>	0	0.0%
공공요금 및 제세	<b>23,197</b>	<b>26,010</b>	△2,813	△10.8%
소모품비	<b>7,112</b>	<b>18,720</b>	△11,608	△62.0%
도서인쇄비	<b>8,400</b>	<b>4,720</b>	3,680	78.0%
지급임차료	<b>16,200</b>	<b>16,200</b>	0	0.0%
전산유지보수	<b>8,500</b>	<b>8,500</b>	0	0.0%
차량유지비	<b>2,248</b>	<b>2,204</b>	44	2.0%
보험료	<b>1,700</b>	<b>1,680</b>	20	1.2%
지급수수료	<b>27,340</b>	<b>26,200</b>	1,140	4.4%
업무추진비	<b>30,000</b>	<b>30,000</b>	0	0.0%
관서업무비	<b>3,960</b>	<b>3,960</b>	0	0.0%
교육훈련비	<b>7,700</b>	<b>3,600</b>	4,100	113.9%
회의운영비	<b>23,400</b>	<b>20,900</b>	2,500	12.0%
행사운영비	<b>0</b>	<b>15,000</b>	△15,000	△100.0%
<b>홍보비</b>	<b>38,000</b>	<b>32,000</b>	<b>6,000</b>	<b>18.8%</b>
포상금	<b>2,500</b>	<b>2,500</b>	0	0.0%
자산취득비	<b>57,000</b>	<b>26,600</b>	<b>30,400</b>	<b>114.3%</b>

### 3. 참고사항

#### ■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## ■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0조(재정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#### ■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1조(출연금의 교부)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#### ■ 2025년도 서울시 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

(잉여금의 처리)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과 발생한 잉여금을 반영하여 출연금 감액 조정